

1. 개정이유

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기업체(연매출 500억원 미만)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(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)

-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24. ~ 8. 5.)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 제11호 본문 중 “제1호”를 “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가 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